

# 내부정보관리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규정은법령에따른신속·정확한공시및임원·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제2조(용어의정의)

①이규정에서“내부정보”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이하“공시규정”이라한다) 제1편에의한공시의무사항과그밖에회사의경영또는재산상황이나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한다.

②이규정에서“공시책임자”라함은공시규정제2조제4항에따라회사를대표하여신고업무를수행할수있는자를말한다.

③이규정에서“임원”이라함은이사(「상법」제401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포함한다) 및감사를말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이외에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관하여는관련법령과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의한다.

###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및내부정보관리에관한사항은관련법령, 규정또는정관에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따른다.

## 제2장 내부정보의관리

### 제4조(내부정보의관리)

①임원·직원은업무상알게된회사의내부정보를엄중히관리하여야하고, 업무상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내부정보를사내또는사외에유출하여서는아니된다.

②대표이사또는공시책임자는내부정보및그와관련된문서등의보관, 전달, 파기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을정하는등내부정보관리를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5조(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공시책임자를정하여이를한국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공시책임자를변경한때에도또한같다.

②공시책임자는내부정보관리제도의수립및운영에관련된업무를총괄하며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공시의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운영상황점검및평가
3. 내부정보에대한검토및공시여부의결정
4. 임원·직원에대한교육등내부정보관리제도의운영을위해필요한조치
5. 내부정보의관리를담당하거나공시업무를담당하는부서또는임원·직원에대한지휘및감독
6. 그밖에내부정보관리제도의운영을위해필요하다고대표이사가인정한업무

③공시책임자는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권한을가진다.

1. 내부정보와관련된각종서류및기록의제출을요구하고열람할수있는권한
2. 회계또는감사업무를담당하는부서, 그밖에내부정보의생성과관련이있는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임원·직원으로부터필요한의견을청취할수있는권한

④공시책임자는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경우관련업무를담당하는임원과협의할수있으며, 회

사의비용으로전문가의조력을구할수있다.

⑤공시책임자는내부정보관리제도의운영상황을정기적으로대표이사에게(또는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제6조(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또는공시책임자는공시담당자를정하여한국거래소에신고하여야한다. 공시담당자를변경한때에도또한같다.

②공시담당자는내부정보관리와관련하여공시책임자의지휘를받으며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수집과검토및공시책임자에대한보고
2. 공시의집행을위해필요한업무
3. 공시관련법규의변경등내부정보의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의확인및공시책임자에대한보고
4. 그밖에대표이사또는공시책임자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 제7조(내부정보의집중)

임원및각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공시책임자에게그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1. 내부정보가발생했거나발생이예상되는경우
2. 내부정보중이미공시된사항을취소또는변경해야할사유가발생했거나발생이예상되는경우
3. 그밖에공시책임자의요구가있는경우

#### 제8조(내부정보의사외제공)

①임원·직원이업무상의이유로회사의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자등에대하여불가피하게내부정보를제공해야하는경우공시책임자에게이에관한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경우공시책임자는관련내부정보의비밀유지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3장내부정보의공개

#### 제9조(공시의종류)

회사의공시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공시규정제1편제2장제1절에따른주요경영사항신고및공시
2. 공시규정제1편제2장제2절에따른조회공시
3. 공시규정제1편제2장제3절에따른공정공시
4. 공시규정제1편제3장에따른자율공시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편제1장에따른증권신고서등의제출
6. 법제159조, 제160조및제165조와공시규정제4절에따른사업보고서등의제출
7. 법제161조에따른주요사항보고서의제출
8. 그밖에다른법규에따른공시

#### 제10조(공시의실행)

①공시담당자는제9조에정한공시사항이발생한경우필요한내용을작성하고필요한서류등을갖추어공시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공시책임자는제1항의내용과서류등이관련법규에위반되지않는지의여부를검토하여이를대표이사에게보고한후공시하여야한다.

#### 제11조(공시후의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공시담당자는공시한내용에오류나누락이있는경우지체없이이를시정하기위한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2조(언론사의취재등)

①언론사등으로부터회사에대한취재요청이있는경우대표이사또는공시책임자가이에응한다. 필요한 경우관련부서의임원.직원이취재에응하게할수있다.

②언론사등에보도자료를배포하고자하는경우공시책임자의승인을얻어야한다. 공시책임자는필요한 경우대표이사에게보도자료의배포와관련된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③언론의보도내용이사실과다르다는것을알게된임원.직원은이를공시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공시책임자는관련사항을대표이사에게보고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회사의경영내용, 사업계획및전망등에대한기업설명회는공시책임자의승인을거쳐개최되어야한다.

## 제4장내부자거래등에대한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반환)

①임원과직원(직무상법제174조제1항의미공개중요정보를알수있는자로서법시행령제194조가정하는자에한한다. 이하제15조에서같다)은법제172조제1항의특정증권등(이하"특정증권등"이라한다)을 매수한후 6개월이내에매도하거나특정증권등을매도한후 6개월이내에매수하여이익을얻은경우에 그이익(이하"단기매매차익"이라한다)을회사에반환하여야한다.

②회사의주주(주권외의지분증권또는증권예탁증권을소유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가회사에대하여제1항에따른단기매매차익을얻은자에게단기매매차익의반환청구를하도록요구한경우공시책임자는그요구를받은날부터 2개월이내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제1항에따른단기매매차익의발생사실을회사에통보한경우공시책임자는지체없이 다음각호의사항을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하여야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반환해야할자의지위
2. 단기매매차익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을통보받은날
4.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계획

5. 회사의주주가회사로하여금단기매매차익을얻은자에게단기매매차익의반환청구를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회사가요구를받은날부터 2개월이내에그청구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주주는 회사를대위(代位)하여청구를할수있다는뜻

④제3항의공시기간은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을통보받은날부터 2년간또는단기매매차익을반환받은날중먼저도래하는날까지로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매매등에대한통보)

임원과직원은특정증권등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하는경우그사실을공시책임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이용행위금지)

임원.직원은법제174조제1항이정하는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미공개중요정보를포함한다)를특정증권 등의매매, 그밖의거래에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 제5장보칙

제17조(교육)

공시책임자와공시담당자는공시규정제36조및제44조제5항에따른공시업무에관한교육등을이수하여야하고, 공시책임자는교육내용이관련임원.직원에게전파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8조(규정의개폐)

이규정의개정또는폐지는대표이사가한다.

제19조(규정의공표)

이규정은회사의홈페이지에공표한다. 규정을개정한때에도또한같다.

## 부칙

이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